**학생회칙 정리**

**제 2 장 학 생 총 회**

**제 10조 (권한) 3절**

3) 단과대 학생회장 및 자치기구장의 탄핵안은 총 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과대 및 자치기구회칙에 따르며, 회칙이 없을 경우 총 학생회칙에 준한다.

**제 3 장 대 의 원 총 회**

**제 14 조 ( 지 위 )**

본 회의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의결기구이다.

**제 15 조 ( 목 적 )**

본 회 학생의 대의기관으로서, 각 기구 및 학생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회의 효율적인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6 조 ( 구 성 )**

본 회의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17 조 ( 대의원 )**

1. 대의원은 본 회 전체 트랙, 학과(부)의 각 학년별 대표 1인을 기준으로 한다.

(단, 트랙 대의원 1학년은 제외한다.)

2. 서양화, 동양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전공을 제외한 인문예술대학 1학년 대의원은 6명으로 한다.

3.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 학과를 제외한 디자인대학 1학년 대의원은 ICT디자인학부 2명,글로벌패션산업학부 2명으로 한다.

4. 사회과학대학, IT공과대학 1학년 대의원은 6명으로 한다.

5. 창의융합대학 상상력인재학부 1학년 대의원은 2명으로 한다.

6. 대의원은 대의원 총회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7. 대의원은 각과 선출 후 대의원 조직국에 등록함으로써 대의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8. 대의원은 대의원 선거 시 대의원의 연락처를 후보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갖는다.

**제 18 조 ( 회 의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단, 필요시 의장은 비공개 회의를 할 수 있다.

**제 19 조 ( 의 장 )**

1.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한다.

2. 의장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맡는다.

3 총대의원회 의장이 궐위 시, 부의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의장, 부의장 모두 탄핵 소추 중이거나 궐위 시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 상임위원이 권한을 대행한다.

**제 20 조 ( 임 기 )**

대의원 임기는 회계 연도에 준한다. 단, 임의적으로 한학기로 할 수 있다.

**제 21 조 ( 징 계 )**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회칙을 어겼을 때.

2. 대의원이 직무를 해태한 때.

3. 총회(상임위원회의) 결석 1회 또는 지각 및 조퇴의 합이 2회일 때.

**제 22 조 ( 징계방법 )**

1. 의장은 전조의 징계사유가 있는 대의원에 대하여 우선 경고한다.

2. 당해 대의원이 경고에 불구하고 의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대의원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대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다.

3. 징계에 의해 제명된 대의원의 해당 학과(부), 트랙, 전공의 학년은 당해 잔임 기간 동안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4. 박탈당한 대의원의 경우 대의원 비교과 포인트, 장학금 등을 미지급한다.

**제 23 조 ( 업무 및 권한 )**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회칙 개정의 발의

2. 회칙 개정의 발언권

3. 학생 총회의 소집 요구권

4. 학생회비 심의 및 승인권

5.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심의 및 승인권

6. 예산 결의안의 심의 및 승인권

7. 결산 심의권

8. 대의원 총회 의장, 부의장 선출권

9.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대의원총회 의장 탄핵권

10. 9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학생자치기구의 회장 및 위원장 탄핵권

11. 각 집행국 전 부장의 일괄 인준권

12. 각 집행국 전 부장의 해임 의결권

13. 운영 위원 및 각 부장의 출석 요구권

14. 기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 24 조 ( 소 집 )**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5월, 그리고 9월과 11월에 대의원 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 상임위원 1/2 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인원의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전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대의원총회는 당해 연도 대의원 자격을 가진 자의 과반수의 등록 시 소집할 수 있다.

**제 25 조 ( 의 결 )**

1. (일반 정족수) 제 23조에 규정된 대의원총회의 의결 사항 중 아래의 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4, 5, 6, 8, 11, 12, 13, 14항)

2. (특별 정족수) 제 23조에 규정된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중 2(3)항과 10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하고, 9항은 재적 대의원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 4 장 상 임 위 원 회**

**제 26 조 ( 구 성 )**

1. 대의원회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상설기구이다.

2. 상임위원은 각 트랙, 학과(부)별로 3학년 혹은 4학년 대의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제 27 조 ( 업무 및 권한 )**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회칙 개정안

2) 탄핵의 소추

3)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4) 집행부의 예산, 결산과 사업계획 및 사업

2. 본 회의 경리, 서무 및 기타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다.

3. 대의원총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대의원총회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4. 상임위원회는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필요한 경우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임무 완료시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체된다.

6. 기타 대의원총회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7. 상임위원은 매학기 초에 각 학과(부), 트랙 학생회로부터 학기의 수입을 보고받을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8. 상임위원은 매학기 말에 각 학과(부), 트랙, 전공 학생회로부터 학기의 지출을 보고받아 감사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9. 상임위원은 각 학과(부), 트랙, 전공 학생회로부터 수입과 지출을 보고받아 검토한 후

해당 내역을 총대의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제 28 조 ( 소 집 )**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5월, 그리고 9월과 11월에 대의원 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인원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상임위원회 소집은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전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상임위원회는 당해 연도 상임위원 자격을 가진 자의 과반수의 등록 시 소집할 수 있다.

**제 29 조 ( 의 결 )**

1. 제25조 1,2항을 따른다.

**제 9 장 총 대 의 원 회**

**제 50 조 ( 지 위 )**

총대의원회는 본 회의 최고 감사기구이다.

**제 51 조 ( 구 성 )**

1. 총대의원회는 대의원과 관련한 제반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총대의원회는 정·부의장 및 6개(감사국, 사무국, 정책국, 홍보국, 기획국, 운영국)의 부서를 두며 필요시 타부서를 둘 수 있다.

**제 52 조 ( 정, 부의장 )**

1.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며. 정·부의장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2. 총대의원회는 부의장을 두며 정의장이 부재 시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제 53 조 ( 임기 및 선출 )**

1. 총대의원회 정·부의장의 임기는 선거시행세칙 제81조에 따른다.

2. 총대의원회 정·부의장의 자격은 선거시행세칙 제8조에 따른다.

3. 의장 궐위 시는 부의장이 잔임 기간 동안 권한을 대행한다. (단, 잔임 기간이 5개월 이

상일 때는 즉시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4. 부의장 궐위 시는 상임위원회에서 후보 1인을 선임, 대의원총회를 통해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새로 임명한다. (단, 의장이 판단하의 공석으로 둘 수 있다.)

**제 54 조 ( 업무 및 권한 )**

총대의원회는 대의원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되 운영의 목적에 맞춰 자율적으로 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1) 감사국 : 본 회의 학생회비 지출 및 사업에 관한 감사 일체를 담당한다.

매 예산 인출시마다 예산 인출사항을 통보받는다. 각 기관에서 불이행시 예산

인출을 동결할 수 있으며 운영계획서와 다른 경우도 해당된다.

감사관련 업무 및 사후 처리는 감사 시행세칙에 따른다.

2) 사무국 : 총대의원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3) 정책국 : 총대의원회의 정책 생산 및 정책 관련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4) 홍보국 : 총대의원회의 운영 및 행사의 홍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5) 기획국 : 총대의원회의 모든 행사의 기획을 담당한다.

6) 운영국 : 총대의원회의 원활한 조직운영을 담당한다.

**제 10 장 단 과 대 학 학 생 회**

**제 62 조 ( 자치내규 )**

단과대학 학생회의 자율적 활동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단과대학 학생회 자치

내규에 따른다. 단, 해당 학생회의 자치내규가 없을 시는 본 회칙을 따른다.

**제 11 장 학 생 복 지 위 원 회**

**제 68 조 ( 회 칙 )**

학생복지위원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회칙을 갖는다.

**제 12 장 동 아 리 연 합 회**

**제 74 조 ( 회칙 )**

동아리 연합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회칙을 갖는다.

**부 칙**

1. (효력발생) 본 회칙은 공포 후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유권해석)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감 사 시 행 세 칙**

**2절 중앙감사위원회**

**제 3 조 (지위)**

중앙 감사위원회는 총대의원회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제 4 조 (조직)**

중앙감사위원회는 총대의원회 감사국으로 조직한다.

**4절 단대감사위원회**

**제 12 조 (목적)**

학과 학생회비의 올바른 운용 및 각 과 학생회 사업의 진행과 원활한 학생회 활동에 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3 조 (지위)**

단대 감사위원회는 학과(부) 및 트랙 감사에 관하여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제 14 조 (조직)**

단대 감사위원회는 각 소속단과대별 상임위원 전체와 단대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